

2026. 4월



제389회 임시회
경제노동위원회
협약보고



노동국

목 차

1. (협약)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道-노동부 업무협약3

1

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-고용노동부 업무협약 (사후)

□ 추진 목적

- 「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」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

□ 협약 개요

- (일시/장소) '26.1.30.(금) /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 룸
- (협약기관) 경기도 등 8개 시·도와 고용노동부 간
 - 고용노동부의 「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」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·도와 고용노동부 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

□ 협약 주요내용

- (협약기간) 체결일 ~ '26.12.31.
- (기관 간 역할)
 - 노동부: 기본계획 수립, 정책적 지원, 예산집행 감독, 성과평가 등
 - 경기도: 세부계획 수립, 사업장 발굴·참여독려,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
- (정보 공유 및 협력)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'26. 3월 ~ 12월
- 사업예산 : 2,500,000천원 (국비 100%)
- 운영기관 :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※ 공모를 통한 선정('26.2.26.)
- 사업내용 : 위험성평가 지원 350개소,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1,500건, 외국인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0회
- 추진경과
 - 지중해 지원사업 발표 심사('26.1.13.), 노동부 최종 선정결과 공고('26.1.23.)
 - 노동부 선정결과 통보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('26.1.28.)
 - 고용노동부와 8개 시·도간 업무협약 체결('26.1.30.)
 - 지중해 사업계획 의회 업무보고('26.2.9.) ※ 협약 건 경제노동위원장 보고('26.2.5.)

담당부서	노동국 노동안전과	과 장	이 인 용 (8030-4620)	산업재해예방팀장	김 영 옥 (8030-4551)
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-고용노동부 업무협약서

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「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」의
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
『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』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
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
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 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
'26.12.31.까지로 한다.

제3조(협력 범위) 양 당사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1. 『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』 기획 및 추진
2. 50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, 취약 업종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
예방 지원
3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, 교육·컨설팅 및 현장 밀착형
예방 활동,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추진
4. 지역기반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
5. 사업 성과관리,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

제4조(고용노동부의 역할)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적·제도적 지원
2.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
3. 중앙 차원의 전문 자원 연계 및 기술·정보 지원

제5조(경기도의 역할)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
2. 지역 내 대상 사업장 발굴 및 참여 독려
3. 지역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과 협력체계 구축
4. 사업 추진 실적 관리 및 정기적 보고
5.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결과보고

제6조(정보 공유 및 협력) 양 당사자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.

제7조(비밀 유지) 양 당사자는 업무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8조(협약 변경 및 해지)

- ① 본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경우,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월 30일



경기도지사

김 동 연

代 行 官
김 대 순



고용노동부장관

김 영 훈

代 行 官
김 영 훈